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실시

- 전국적 상담 네트워크 구축, 3월 23일~4월 1일 공모 진행
- 정착·체류·교육·문화까지...동포의 안정적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동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전국적 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실시합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정착 지원, 체류자격 등 법적 지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내 생활 상담, 교육·문화·통역 지원 업무 등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왔으며,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출입국·체류 영주·국적 상담, △한민족 정체성 강화,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동포 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번 공모는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따라 아직 동포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법무부는 신청 단체(기관)의 공공성, 인프라, 동포 대상 사회 통합 교육 및 사회 적응 지원 경험, 지역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동포체류 지원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인 만큼, 관심있는 단체(기관)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참고)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현황 (23개)

- 수도권 : 9개
 - 서울특별시 3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재)한국이민재단, (사)대한결핵협회
 - 인천광역시 1 :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 경기도 5 : (사)경기글로벌센터, 한중사랑교회, (사)너머,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희망365
- 충청권 : 2개
 - 대전광역시 1 : 대전다문화센터
 - 충청남도 1 : (사)반딧불나눔복지재단
- 호남권 : 3개
 - 광주광역시 2 : (사)고려인마을, 이주민종합지원센터
 - 전라남도 1 :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목포영암지부)
- 경상권 : 7개
 - 울산광역시 1 : (사)울산외국인센터
 - 경상북도 4 :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주 YMCA, 하이웃이주민센터,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 경상남도 2 : (사)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사)영진코리아센터
- 강원제주권 : 2(제주글로벌센터, 제주이주민센터)

<첨부 : 동포체류지원센터 공고문>

담당 부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2-2110-4491)
		담당자	사무관	김연우 (02-2110-4141)



법무부 공고 제2026-137호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알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체류·영주·국적 등 법적 지위 보장과 한국어·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취업·법률 상담 등 동포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유관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법무부장관

【전체일정】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6.3.23.(월) ~ 4.1.(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	'26.4.2.(목) ~ 4.24.(금)	서류검토현장 실태조사 등
공모결과 발표	'26.4.30.(목)	법무부 홈페이지
위촉 및 지정서 교부	'26.5월 중	미정

1. 공모 개요

- 목 적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지원 및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지원자격 : ※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원 가능
 - 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고충·취업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고, 아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정부·지자체의 운영기관 및 대학 등 공공성이 있을 것

-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사업
-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 법적 지위 향상 및 관련 상담
-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사업·통역 지원 업무
- ▶ 취업, 주거, 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 ▶ 동포의 출국지원 및 건전한 체류활동을 위한 법무부 협조 요청사항 지원
- ▶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정기간 : '26. 6. 1.부터 '27. 6. 30.까지(1년 1월)

2. 접 수

○ 접수기간 : '26. 3. 23.(월)부터 '26. 4. 1.(수)까지 (10일 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gaeun911@korea.kr)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접수 시 기간 내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첨부 1】

②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첨부 2】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해당 기관에 맞는 서류 제출 (예)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④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

⑤ 보유 건축물·시설물 확인 가능 서류(등기부등본 등)

⑥ 상근 상담직원 운영 여부 확인 가능 서류(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

⑦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

<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소재지)** 보장 대상 시설물 등 소재지 주소가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장소와 일치하여야 함
- **(보장기간)** 사업개시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
 ※ 단, 공모일 기준 유효하나 '26년 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보며, 추후 기간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보장금액)** 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담보사항으로 1인당 1억 원 이상, 사고당 3억 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별도가입여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보험 내 담보사항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 가입 불필요

- 등기우편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정부과천청사)(13809)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담당자 앞
- 접수 문의 :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02-2110-4056)

3. 신청 기본요건 및 심사절차

○ 기본요건

-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정부·지자체 운영기관 및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포함)으로써, 동포지원을 위한 적합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을 것
- 건축물이 재해, 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상근 상담직원을 3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포지원의 상징성, 지역적 특수성, 지역적 배분 등 균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단, 보험 가입에 관한 요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

○ 우대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동포 중점 운영기관'에 해당하며, 실적이 우수할 경우
-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쉼터 시설을 갖춘 경우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적격성 여부 확인
 -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심사 : ‘동포체류지원센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최종지정 : 법무부 최종 지정

4. 공모결과 발표

○ '26. 4. 30.(목),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모결과 발표

- ※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소시넷(www.socinet.go.kr) 홈페이지

5. 준수 사항

-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는 법무부의 동포지원정책을 준수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의 추진이 부진·부실한 경우
- ▶ 법무부의 동포지원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사업을 수행한 경우
- ▶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첨부】 1.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2.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첨부 1】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단체명			단체종류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대표자			연락처		
단체등록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대표이메일		
직원현황	상근(명)			비상근(명)	
	자원봉사자(명)				
시설현황	전체(㎡)				
	사무실(㎡)				
	강의실(㎡)	(개)	수용가능인원		
		(개)	수용가능인원		
		(개)	수용가능인원		
	컴터(㎡)	(개)	수용가능인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여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여부	
	동포중점운영기관 여부				
최근 2년간 주요 실적(별지 추가 사용 가능)					
사업명	내 용			성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직인) 법무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관·단체의 약도 및 시설배치도 등					

※ 법무부 지정 “동포중점운영기관”은 동포중점반 운영실적을 필수 기재

【첨부 2】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프로그램 명칭	주요내용	운영목표	추진시기

본 단체(기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바
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직인)